

#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94 호
----------	---------

제출년월일 : 1999. 11 . 19.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1. 개정이유

-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 신설 (안제3조의2)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함.

##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
- 입법예고 : 불필요

## 4. 본 문 : 붙임과 같음.

##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의견진술) ①제3조에 의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과태료)① ~ ② (생략)</p> <p>③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신설)</p>	<p>제3조(과태료)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제3조의2(의견진술)①제3조에 의하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p>